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0원
- 징수결정액 : 4,451천원
- 실제수납액 : 891천원
- 결손처분액 : 0원
- 미수납액 : 3,560천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20.0%(전년도 100.0%)임.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징수율 (C/B)
합 계	—	4,451	891	—	3,560	20.0
세 외 수 입	—	4,451	891	—	3,560	20.0
임시적 세외수입	—	4,451	891	—	3,560	20.0
기타수입	—	4,451	891	—	3,560	20.0
그외수입	—	4,451	891	—	3,560	20.0

※ 결손처분액 = 불납결손액 + 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예산액 : 1,548,321천원
- 예산증감 : 0 원
- 예산현액 : 1,548,321천원
- 지출액 : 1,295,277천원
- 이월액 : 0 원
- 불용액 : 253,044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6.3%(전년도 7.5%)가 발생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2억 5천 3백만원임.

<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 = A-B-C)	불용률 (%)
총 예산	1,548,321	1,295,277	-	253,044	16.3
사업예산계	1,411,263	1,190,439	-	220,824	15.6
민생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1,411,263	1,190,439	-	220,824	15.6
민생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1,411,263	1,190,439	-	220,824	15.6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63,600	56,471	-	7,129	11.2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278,367	1,070,951	-	207,416	16.2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69,296	63,017	-	6,279	9.1
일반예산계	137,058	104,838	-	32,220	23.5
기본경비	137,058	104,838	-	32,220	23.5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 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2019년도 말 민생사범경찰단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124개, 현재액은 127,836천원임.

〈 2019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연 번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 명	단위	정수	내용 연수	구분	2018 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 물품 증감현황										2019 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소계	
합		계		120		수량	120	3	1			4						124
						금액	124,466	1,000	2,370			3,370						127,836
1	25101611	화물트럭	대	2	8	수량	2											2
						금액	54,372											54,372
2	40101787	냉난방기	대	13	9	수량	13											13
						금액	7,721											7,721
3	43211503	노트북컴퓨터	대	1	6	수량	1											1
						금액	1,529											1,529
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대	2	8	수량	2											2
						금액	2,794											2,794
5	45121516	디지털캠코더또 는비디오카메라	대	102	9	수량	102	3	1			4						106
						금액	58,050	1,000	2,370			3,370						61,420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은 없으나, 착오지급된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의 반납에 따라 ‘그외수입’으로 445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음.
- 2019회계연도에 발생한 급여 및 수당반납 세외수입(445만원)은 2018회계연도 예산지급분으로 다음연도인 2019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임(「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1. 경상적 세외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나. 사용료수입	다. 수수료 수입
라. 사업수입	마. 징수교부금수입	바.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나. 부담금	다. 과징금 등
라. 기타수입	마. 지난연도수입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그외수입 세부내역 >

(단위 : 원)

연 도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2019	224-06 그외수입	0	4,451,290	891,290	3,560,000	수당 반납분에 따른 직원 자금압박으로 체납. 20년도 38세금징수과 체납 이관 및 분납조정에 따른 일부 수납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91호, 2020. 03. 24. 공포, 03. 24.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납부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18	224-06 그외수입	0	40,000	40,000	0	2017년 11월, 12월 수당 반납 (시부사망에 따른 가족수당 반납)
2017	224-06 그외수입	0	-	-	-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원, %)

연 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2019	4,451,290	891,290	3,560,000	20%
2018	40,000	40,000	0	100%
2017	-	-	-	-

〈 2019년 수당 반납 세부내역 〉

(단위 : 원)

예산과목	과세내역	건 수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총 계			4,451,290	891,290	3,560,000	
224-06 그외수입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반납 (2018.12.21.자 면직)	1	436,460	436,460	-	
	2018년 연가보상비 정산 반납	4	359,760	359,760	-	
	가족수당 반납 (가족사향 변경)	1	3,560,000	-	3,560,000	38세금 징수과 이관 체납관리 및 분할납부독려 (20.4월 일부 추가 수납)
	전문직위수당 반납 (서울시 급여시스템 갱신요류)	2	95,070	95,070	-	

-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의 징수결정액(445만원) 대비 수납률은 20%(89만원)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356만원(가족수당 반납)으로 징수결정액(445만원) 대비 미수납률이 80%에 달하고 있음.

- 미수납액인 가족수당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착오 지급할 경우 상당기간 잘못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 조사로 집행 후 다시 반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적정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로서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에 기여하는 부서로서 높은 법질서 의식이 요구되므로, 향후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수당 등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당지급 관리와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의 반납 등 수당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가.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

-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업별 사무관리비 총액은 6억 2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3.3%를 집행(1억 4백만원, 불용률 16.7%) 하였으며, 세부 내역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외통역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10만원을 집행하였음.
 - ※ 의회의 지적에 따라 2020년 예산에서는 ‘공무국외 통역비’로 160만원 편성하였음.
- ‘강사료’는 6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819만원(133.5% 초과지출)을 지출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209만원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했으며,

- '홍보비'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억 170만원(102% 초과지출)을 지출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170만원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 '기본사무용 종이류'는 11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15만원(180.5% 초과지출)을 지출하여 96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사무관리비 예산을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음.

〈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2019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산 출 액		집행액	집행잔액	편성액
		세부내역	편성액			
계			627,291	522,685	104,606	599,324
특별사법경찰직무역량강화	사무	강사료	6,140	8,195	△2,055	7,695
		원고료	660	396	264	360
		책자인쇄(교재)	7,686	7,597	89	8,250
		교육운영비	1,264	1,044	220	2,300
		기본직무교육 교육생 중식비	3,850	2,263	1,587	2,600
		직무 공동연수	20,000	13,668	6,332	15,000
		국외통역료 등	-	2,100	△2,100	1,600
특별사법경찰활동활성화지원	사무관	기획단속 매식비	72,000	54,311	17,689	62,400
		차량 임차료	177,600	145,464	32,136	175,800
		피복비(제복제작비)	46,200	38,876	7,324	73,500
		홍보비	100,000	101,737	△1,737	40,000
		수사활동 경비	28,800	22,000	6,800	28,800
		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인쇄	-	-	-	5,000
		압수물 폐기 비용	4,000	1,187	2,813	4,000
		수사팀 운영	38,393	38,366	27	38,393
		체력단련실 운영	7,200	3,300	3,900	7,200
		정책자문단 운영	-	-	-	10,000
기본경비	사무리	기본사무용종이류	1,191	2,150	△959	1,229
		소규모수선비	315	380	△65	325
		행정장비수리비	1,512	964	548	1,512
		도서구입비	400	318	82	400

비	주요업무추진급량비	90,720	60,017	30,703	93,60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19,360	18,352	1,008	19,360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²⁾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다음연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에 있어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실소요액을 기반으로 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불용예산 발생의 문제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 15억 4천 8백만원중 12억 9천 5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6.3%(2억 5천 3백만원), 전년(7.5%) 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1.8%)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 = A - B - C)	불용률 (%)
총 예 산	1,548,321	1,295,277	-	253,044	16.3
사 업 예 산 계	1,411,263	1,190,439	-	220,824	15.6

2)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1,411,263	1,190,439	-	220,824	15.6
민생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1,411,263	1,190,439	-	220,824	15.6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63,600	56,471	-	7,129	11.2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278,367	1,070,951	-	207,416	16.2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69,296	63,017	-	6,279	9.1
일 반 예 산 계	137,058	104,838	-	32,220	23.5
기 본 경 비	137,058	104,838	-	32,220	23.5

○ 특히,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사업은 6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5천 6백만원을 집행하여 11.2%의 불용률(불용액 710만원)을 보이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63,600	56,471	7,129	11.2%
사 무 관 리 비	39,600	35,263	4,337	11%
국 외 업 무 여 비	15,000	12,233	2,767	18.5%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9,000	8,975	25	0.3%

- 이 중 ‘국외업무여비’는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17년(880만원, 58.8%)과 2018년(970만원, 67.7%)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여 18.5%의 불용률(1,200만원을 집행, 불용액 270만원)을 보이고 있음.

- ‘국외업무여비’의 편성예산 대비 높은 불용률은 의회의 지적에 따라 그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2018년 35.3% → 2019년 18.5%)하였지만, 향후에도 민생사법경찰단은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시 과거결산결과 등 예산집행 상황을 감안한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2017년에는 태국(관광경찰의 역할과 기능) 및 일본(광역단위 자치경찰 운영)을 방문하였으며, 2018년에는 중국(상표권침해 분야) 방문 및 일본(자치경찰 운영 벤치마킹)을 방문하였고, 2019년에는 베트남 2회, 대만을 방문하였음.

○ 2019년 민생사법경찰단 공무국회 출장내용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공무국외여행명 (출장국, 출장인원)	출장국 선정사유
15,000	12,233	-	-
	3,453	수사관련,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를 위한 베트남 공무국외여행 (베트남, 3명)	바이엔티 및 바이엔티 유사제품 등에 대한 베트남에서의 생산규모, 자국 소비 실태, 국내 반입경로 (유통사례) 등을 확인하고자 현지에서 출장하여 수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함께 사례조사를 하고자 함
	4,539	해외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만, 3명)	'18.1.18.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사회복지분야 수사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해외 도시의 사회복지보조금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시 보조금 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4,241	부동산 수사사례 및 범죄 예방 활동 등 조사 (베트남, 3명)	최근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와 다낭시 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부동산 관련 범죄 수사 사례 및 범죄예방 활동 등 자료를 수집하고 부동산 중개업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하여 부동산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국외업무여비’ 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7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국외업무여비)	15,000	8,814	6,186	41.2%
2018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국외업무여비)	15,000	9,707	5,292	35.3%
2019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국외업무여비)	15,000	12,233	2,767	18.5%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12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10억 7천만원을 집행하여 16.2% 불용률(불용액 2억 7백만원)을 보이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278,367	1,070,950	207,417	16.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59	6,850	9	0.2%
사무관리비	474,193	405,241	68,952	14.6%
공공운영비	77,480	55,096	22,384	28.9%
국내여비	378,000	314,177	63,823	16.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00	20,809	191	1%
특정업무경비	276,000	231,819	44,181	16.1%
재료비	15,000	10,522	4,478	29.9%
배상금	2,160	916	1,244	57.6%
자산및물품취득비	27,675	25,520	2,155	7.8%

※ 불용사유

- ▶ 공공운영비 : 정부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차량 유류비 집행잔액
- ▶ 재료비 : 의약, 식품 수사시 시료 검사 등을 위한 약품 등 재료 수거에 따른 비용 집행 잔액
- ▶ 배상금 등 : 참고인 조사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 이 중 '배상금'은 참고인 조사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편성 216만원)에도 집행실적(70만원, 30.5%)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불용처리(124만원, 57.6%) 하였는바, 참고인 조사 여비 지급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배상금'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9 배상금	2,160	916	1,244	57.6
2018 배상금	2,160	707	1,453	67.3
2017 배상금	1,080	900	180	16.7

< 최근 3년간 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건수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160	916	1,244	15건
2018년	2,160	707	1,453	7건
2017년	1,080	900	180	11건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의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이중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1억 1천 3백만원) 대비 불용률이 27.6%(불용액 3천 1백만원)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불용사유로는 특근매식비 집행잔액이라고 하고 있음.

〈 “기본경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본경비	137,058	104,838	32,220	23.5%
사무관리비	113,498	82,181	31,317	27.6%
국내여비	8,820	7,957	863	9.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00	5,462	38	0.7%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240	9,238	2	0.1%

- 이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인력운영이 안정적이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최근 5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자치구 파견인력은 2018년 대비 12명이 감소하여 전체인원이 2018년 대비 8명이 감소하였고, 2016년 대비 전체인원이 23명이 감소함에 따라 부서의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해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인바,

- 민생사법경찰단은 적정한 인력 운영계획 및 그에 맞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생사법경찰단의 자치구 파견인력은 전체 현원의 30~40%를 차지하지만 파견기간 1년~2년으로 기관 또는 본인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 복귀함. 최근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하고자 민생사법경찰단 내 파견 직원 선정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 민생사법경찰단은 '08년부터 자치구별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함

- '시'는 조직운영과 경비를 부담하고 '자치구'는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한다는 협약 체결
<제73차 구청장협의회('07.10.)>

〈 최근 5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인원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시	자치구	차이
2016년	119	61	58	-
2017년	113	62	51	△6
2018년	104	62	42	△9
2019년	96	66	30	△8
2020년 (5월 25일 기준)	99	67	32	+3

※ 市 지원근무자 2명 제외한 인원 현황임 (2019, 2020연도)

〈 2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공공운영비	77,480	55,095	22,384	28.9	정부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차량 유류비 집행잔액
	재료비	15,000	10,522	4,477	29.9	의약, 식품 수사시 시료 검사 등을 위한 약품 등 재료 수거에 따른 비용 집행잔액
	배상금	2,160	915	1,244	57.6	참고인 조사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13,498	82,181	31,316	27.6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 이렇게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바, 민생사법경찰단은 과거 결산실적을 감안한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예산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 민생사법경찰단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증대 및 운용의 객관성 확보’가 지적되었으며, “디지털 수사 지원 건수”의 경우 2018년 목표(30건)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64건)을 달성하였음에도 2019년 목표를 2018년 실적에 못 미치는 목표(35건)를 설정하는 등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당해 목표치를 재조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바, 향후 민생사법경찰단은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있어 보다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재정효율성 재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9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디지털 수사 지원 건수(건)	연간 디지털 수사 지원 건수	목표	30	35
		실적	64	50
		달성률(%)	213%	142%

※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104면 표 인용.

- ※ “성과목표관리제도”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결산서 작성 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